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0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김준혁

허성무 · 송옥주 · 서미화

김종민 • 민병덕 • 임미애

전종덕 • 박지원 • 이기헌

박희승 • 이재관 • 박해철

정진욱 • 김 윤 • 조계원

권향엽 · 정일영 · 전진숙

송재봉 · 최민희 · 양부남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의 규제에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 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여성전용 숙박업"이란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의2. "여성전용 숙박업"이란 여		
	<u>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숙</u>		
	<u>박업을 말한다.</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생 략)		